

## (질의)

수고가 많으십니다

폐기물관리법 조항 해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

(관련근거)

### ○ 폐기물관리법 제25조(폐기물처리업)

- ① 폐기물의 수집·운반,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(이하 "폐기물처리업"이라 한다)으로 하려는 자(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)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**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**하고,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**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**
  1.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(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)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
  2.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
  3.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·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 지 여부
  4.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으로 「수도법」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
- ③ 제2항에 따라 **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(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·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,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)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·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,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,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**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.
- ⑭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.
  1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
  2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
  3.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

○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

제5조(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·설치·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·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·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

▷ (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)

제3조(산업단지 등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)

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·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(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).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(算定)할 때에는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.
2.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개발·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(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).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할 때에는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.

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”이란 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을 말한다

- 아 래 -

○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받아 해당 산업단지 및 해당 산업단지외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중간처리업(소각장) 및 최종처리업(매립)을 하고자 할 경우

질의1)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7항 제1호에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폐기물중간처리업(소각) 및 최종처리업(매립)을 하는자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(소각)과 최종처리업(매립)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?

질의2)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7항 제1호에 따른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를 해석함에 있어
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(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)에 따른 조건에 연간 폐기물발생량과 조성면적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·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 또는 공장을 개발·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로서 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을 하는자로 되어 있어
-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7항 제1호에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최종처리업(매립)을 하는자만이 동 조항에 해당되므로 폐기물중간처리업(소각)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지?

## 민원 인쇄(회신)

### 신청 정보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청번호      | 1AA-2112-0767543             |
| 신청일       | 2021-12-24 10:06:11          |
| 신청인 구분    | 개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진행상황 통지방식 | 전자우편, 누리집(홈페이지),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|
| 진행결과 통지방식 | 전자우편, 누리집(홈페이지)              |
| 보안 설정     | 아니요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민원 내용

|       |   |
|-------|---|
| 제목    | 폐기물관리법 조항해석   |
| 내용    | 수고가 많으십니다<br>폐기물관리법 조항 해석에 따른 불임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|
| 첨부 파일 | 국민신문고 질의-폐기물관리법 25조17항적용관련.hw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처리기관 정보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처리기관      | 환경부 (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) |
| 처리기관 접수번호 | 2AA-2112-0780343       |
| 접수일       | 2021-12-24 10:24:49    |
| 담당자(연락처)  | 조영준(044-201-7369)      |
| 처리에정일     | 2022-01-12 23:59:59    |

### 답변 내용

|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|--|
| 통지일            | 2022-01-04 15:52:12  |
| 처리결과<br>(답변내용) | ○ 안녕하십니까?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은 산업단지 내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경우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사업계 |

획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이해되며, 동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.

○ 질의1)에 대하여,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17항에 따라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적정통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다만,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○ 질의2)에 대하여, 「폐기물시설축진법」 제5조는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·설치·처리증설 하려는 자에게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,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에서 규정한 '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'와 별개의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○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,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(조영준 주무관, 044-201-7378)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첨부 파일

인쇄